

<b>제2024-83호</b> 2024년 9월 13일(금)	<b>시</b>  <b>보</b> 여수시	<b>시 정 지 표</b>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737호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공개모집 공고	1
○ 여수시 공고	제2024-2748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24-2750호	2024년 하반기 방치선박 제거 공고(2차)	8
○ 여수시 공고	제2024-2758호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강제 철거 및 행정 대집행 계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12
○ 여수시 공고	제2024-2759호	도로지정 공고(호명동 신03번지 외 1필지 상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2차) 관련 호명동 1444-23번지)	13
○ 여수시 공고	제2024-2760호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읍 면 동

○ 여수시 국동 공고	제2024-14호	2024년도 국동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추가 모집	20
-------------	-----------	--------------------------------	----

<b>회</b>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공개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4년 9월 13일

## 여 수 시 장

### 1. 위탁대상 시설 : 1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	보육정원 (명)	비고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여수시 시청동1길 30	2,278.26 (지하1층, 지상3층)	170	

### 2. 위탁기간 :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2025. 3. 1. ~ 2030. 2. 28.)

### 3. 공고 및 접수기간 \* 설명회 개최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로 갈음함

가. 공고기간 : '24. 9. 13.(금) ~ '24. 10. 4.(금) / 21일간 \*초일미산입

나. 접수기간 : '24. 9. 24.(화) ~ '24 10. 4.(금) 18:00 / 7일간

※ 접수 후 발견된 오류 또는 누락 서류 보완 불가

다. 접수장소 : 여수시청 총무과 후생복지팀(☎061-659-3199)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접수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실적 증빙서류【붙임 참고】

바.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 게시

#### 【접수결과 1인(법인·단체·개인) 접수 시 처리】

- 접수자가 1인(법인·단체·개인)인 경우 경쟁심사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

#### 4. 신청자 자격요건

#####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부담능력 및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나. 법인·단체의 경우

- 법인이나 단체는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모신청 참가를 의결한 경우에 한함
-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다. 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 신청자격 제외대상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여수시장이 여수시 직장어린이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5.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민간위탁금 외)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

다. 수탁운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라.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마.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바.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의 원장 및 종사자 임용 금지  
 \* 친·인척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준용
- 사.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사항은 약정에 의하여 계약 체결
- 아.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여 타 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 분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자. 수탁운영자는 현재 근무 중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고용승계 등) 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 준수
-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

- 카.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하며,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공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6. 위탁체 선정 기준 및 방법

- 가.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 별표8의2  
 - 행정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의해 심사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94호, 2024.06.27.]
- 나. 심사방법 :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소견발표 심사 병행

- 서면심사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
- 소견발표 심사 : 신청자가 당일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향후 보육에 대한 소신 등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ppt) 발표 후 질의응답(법인·단체는 원장내정자가 발표·응답)

※ 프리젠테이션(PPT, 요약본) 보고서 설명은 10분 이내로 하여야 함

※ 심사순서는 당일 결정하며, 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서면심사 및 소견발표에 대한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1, 2순위가 선정되었을 경우, 1순위가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순위를 위탁자로 결정·계약할 수 있음

※ 단, 2순위 선정은 70점 이상이라도 적격자가 있을시에만 선정함

라. 심사결과는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 개별통지)

※ 모집결과 1명(법인, 단체, 개인)만 접수된 경우 경쟁 심사를 위해 1회에 한 하여 재공고(재공고 시 기접수한 운영체는 기존자료를 인정)

## 7.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총 16부 (원본 1부, 사본 15부)

-【붙임】제출서류 참고하여 제안서 작성

※ 신청서 교부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 다운로드하여 사용

- 발표 PPT자료(USB) : 어린이집 운영 계획 설명 등(10분 이내 작성)

\*추후, 별도 제출안내(심의일 5일전 통보예정)

나. 제출 시 유의사항

- 편철방법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본과 양면인쇄(쪽수 표시), “목차작성”, 간지(색인지)를 부착하고 “100페이지 이내”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별도 제출(편철하지 말 것)

## 8. 심의일정 및 결과발표

가. 일 시 : 추후 공지

나. 심의장소 : 추후 공지

다. 면접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자 : 원장 내정자

- 발표내용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의지 비전, 취약보육 계획 등  
(PPT작성 자료로 10분 이내 발표, 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

라. 결과발표 : 여수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9.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현황은 비공개로 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이후 열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조회결과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라. 신청자는 면접심사일(추후통보)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시에는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바. 그 밖의 원장내정자의 자격미달 발견,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 무효 및 공문서 위조 등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함

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의 유권해석을 따름

자. 신청자는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직접 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반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0.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후생복지팀(☎061-659-31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12.

# 여 수 시 장

###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전남동부지부, 바다야놀자 협동조합 장선옥	여수시 신월동 1804번 지 지선 공유수면	해양레저사업, 레저활동, 마리나대여업, , 마리나보관 계류업, 일반조종, 요트면허시험장, 면제교육장을 위한 접안시설 설치, 부유식스파브이설치	1,762㎡	5년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4. 9. 12. ~ 2024. 10. 2.

###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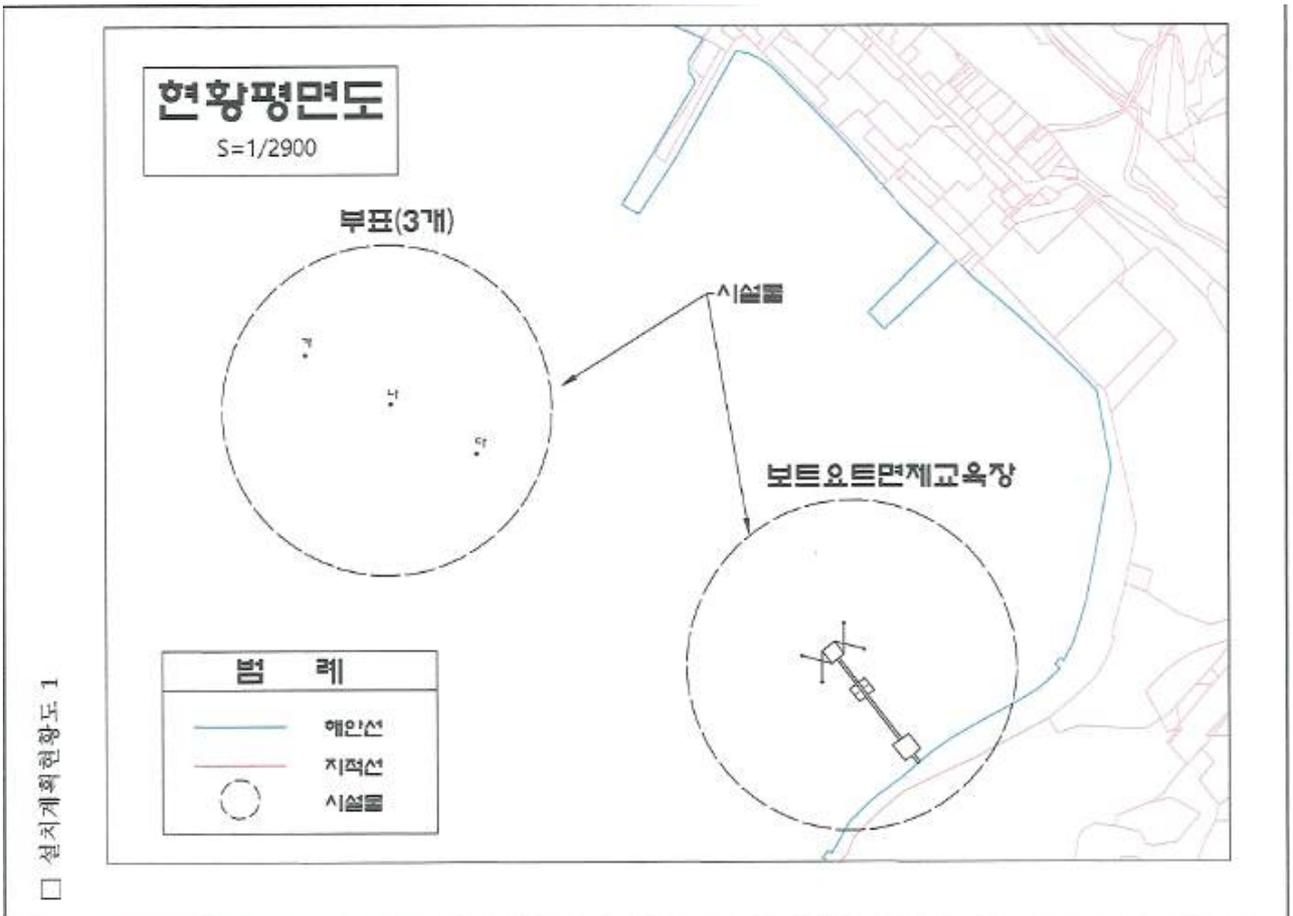
- 제출기간: 2024. 9. 12. ~ 2024. 10. 2.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pdean@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해수8급 박정호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평면도



## 방치선박 제거 공고(2차)

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4년 9월 27일(금)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2일

###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4. 9. 13. ~ 2024. 9. 27.(15일간)

2. 제거대상선박 : 1척 (붙임 참조)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18)로 연락바랍니다.

## 제거대상 선박 내용

관리번호	선명	선질	톤수	방치장소
2024-6	미상	FRP	0.5톤급	여수시 읍촌면 봉전리 810번지 인근

여수시 공고 제2024-2750호				
<b>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b>				
발견장소	여수시 울촌면 봉전리 810번지 인근 공유수면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0.5톤급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4-6호	
제거 예정일자	2024년 9월 27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선박 전경사진				
<p>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u>2024년 9월 27일(금)</u>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9월 1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 수 시 장</p> <p style="text-align: right;">(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p>				

##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
선박의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박소유자 (점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선박 제원	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톤수
담보 설정사항	담보 종류	
	담보권자	
	담보금액	
방치장소		관리번호    제    -    호
의견 내용	근거	-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강제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9. 13.

##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강제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통지
2. 공고기간 : 2024. 9. 13. ~ 2024. 10. 14. (31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위 치	소유자	대상 또는 종류	수 량	비 고
여서동 406번지 도로	미 상	인생네컷 사진부스	1	
		인형뽑기 등	3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무단 적치물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 되지 않고, 적치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직접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 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 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호명동 산103번지 외 1필지(산105-2) 상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2차)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위 치 : 여수시 호명동 1444-23번지
2. 도로면적 : 456m<sup>2</sup>
3. 도로길이 : 현황도 참조
4. 도로 폭 : 현황도 참조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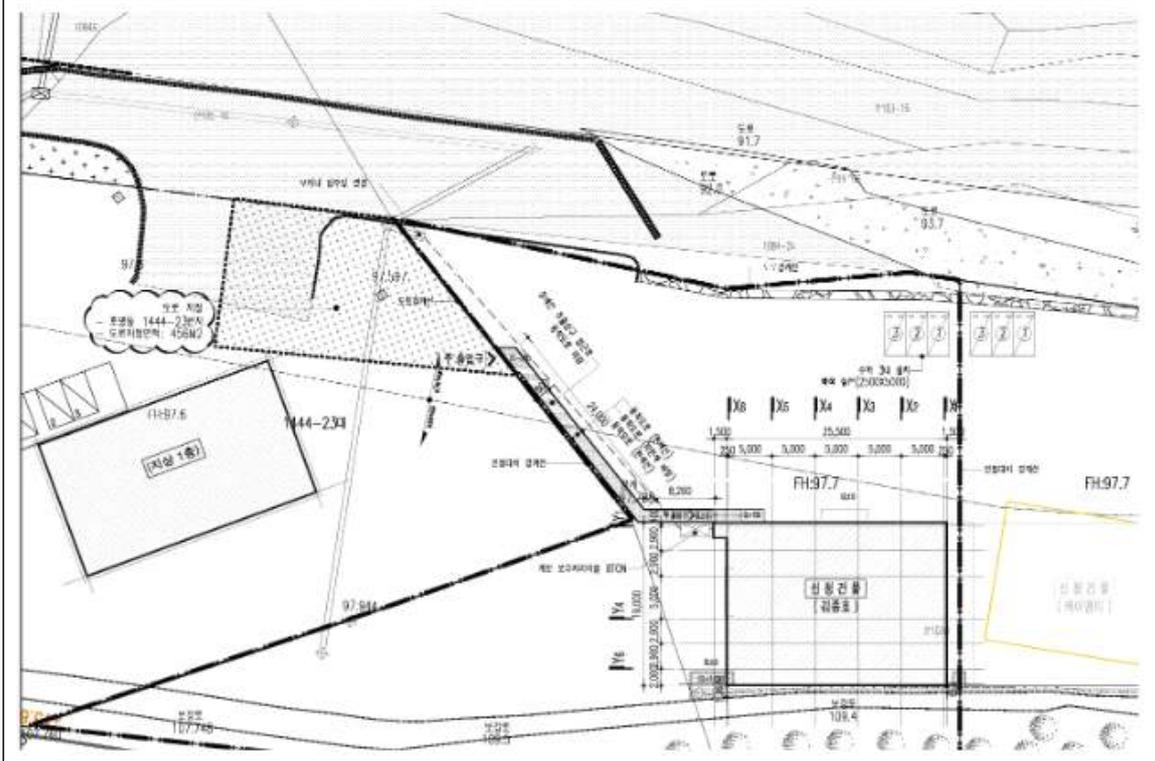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sup>2</sup> )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4,539	456	
1	호명동	1444-23	대	4,539	456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4. 9. .

여 수 시 장

# 현 황 도



## 공 고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4일

## 여 수 시 장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사유

-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 필수 제정

###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조례의 정의 및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안 제2조, 제3조)
- 출자·출연기관에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고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안 제4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2) 문서 참고

4. 입법예고기간 : 2024. 9. 14. ~ 2023. 10. 4.(20일간)

####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 다.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스마트정보과
- 팩 스 : 061-659-5811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2)

##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여수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여수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점검
5.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6. 사고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국동 공고 제 2024 - 14 호

## 2024년 국동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 추가 모집 공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원 배치로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하고자 「2024년 국동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9. 13.

### 국 동 장

#### I. 모집개요

- 모집분야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 채용인원 : 1명
- 모집기간 : 2024. 9. 13.(금) ~ 9. 20.(금) / 8일간

#### II. 근로조건

- 근로조건
  - 근로기간 : 2024. 9. 24. ~ 12. 31.
  - 근무시간 : 주 3일 / 1일 4시간 / 근무시간 읍면동별 탄력 운영
  - 근무지 : 국동 일대
  - 임금수준 : 42,840원/1일 (보험료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근무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속,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및 종량제 봉투 사용 현장 계도, 불법투기 취약지 및 생활폐기물 배출지 관리 등

#### III. 접수 및 선발

- 접수기간 : 2024. 9. 13. ~ 9. 20. 18:00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접수처 : 국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 선정방법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부여 및 선발
-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1부),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필수는 아님), 신청자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참여자격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이고, 불법투기 감시·단속 활동 및 취약지 관리가 가능한 신체건강한 사람
  - 사진촬영이 가능한 사람(스마트폰 소지자)
  - 월 1회 야간단속 가능한 사람(21시 이전 근무 종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동 주민센터(☎061-659-14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근로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4.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여수시		전화번호	자택 ( ) 휴대폰( )
감시원 경력	참여( 회), 미참여( )		휴대폰 사진촬영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월1회 야간단속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21시 이전 근무 종료			
질병유무 및 건강상태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① 본 신청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원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2024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본인은 여수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채용에 따른 제출한 자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사실확인 등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용심사에 필요한 인적 제반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서류 보존기간에만 보유·이용·보관됩니다.
-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여수시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여수시장 귀하